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77호

#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중소베처기업부장과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로 성공창업 유도

##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예비)1인 창조기업\*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광고홍보, 전시참가 등)지원
  - \*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첨부. 세부과제 지원항목]을 참조

## □ 지원금액

○ 총 정부지원금 1,245백만원(평가등급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 평가등급별 지원금액 한도(안) >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원금액 한도	12백만원	8백만원	5백만원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중 최대 80%까지 지원
  -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함

###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100%	총사업비 80% 이하	총사업비 20% 이상
• 총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구성 예시 : 총사업비(100%) 1,000만원 = 정부지원금(80%) 800만원 + 자부담금(20%) 200만원		
• 총 협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함		

-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주관기관별 20개사 내외 선정)
- 주관기관<sup>\*</sup>은 1인 창조기업이 소재지, 입주 지원센터,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
  - \* 주관기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관리(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비집행승인 등) 지원

####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및 연락처 >

연번	<b>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명</b> (주관기관(협력기관)명)	지원규모	연락처		
1	<b>오퍼스이앤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b> (㈜오퍼스이앤씨)	18개사	02-6221-2022		
2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18개사	031-270-9769		
3	<b>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b> (의왕시(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19개사	031-345-2366		
4	<b>미래서비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b> (㈜미래서비스(인천창업통합지원센터))	18개사	032-216-0091		
5	<b>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b> (대전광역시((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개사	042-864-5111		
6	<b>CENTAP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b> (㈜비스퀘어)	20개사	1877-1110		
7	<b>전남정보문회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b>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9개사	061-280-7499		
8	(신규지정 예정 <sup>*</sup> )	18개사	-		
	합계 150개사 -				

- \* 신규지정 주관기관은 '20.3.27.이후 K-스타트업(판로해외진출-1인 창조기업마케팅 지원-공지사항)을 통해 안내실시 예정
-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0.30.(금)까지

## 2 신청 · 접수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 3. 11. (수) ~ 4. 7. (화)
- (신청기간) '20. 3. 27. (금) ~ 4. 7. (화), 17:00까지

#### < 신청 유의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서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이전에 'K-스타트업 가입 및 마케팅 지원사업 제출완료' 요망 \* 신청마감일시('20.4.7. 17:00)까지 최종 단계인 '제출완료' 확인필요
- ②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마감일시('20.4.7. 17: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반환 불가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스타트업 접속  $\rightarrow$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rightarrow$  ③ 사업신청관리(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 시스템) 클릭  $\rightarrow$  ④ (사업신청)(예비)창업자 신청하러가기  $\rightarrow$  ⑤ 2020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rightarrow$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함' 체크 및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rightarrow$  ⑦ 일반현황 입력(주관기관 1개 선택)  $\rightarrow$  ⑧ 팀원정보 입력  $\rightarrow$  ⑨ 사업계획서 등 파일 첨부하기(용량제한 20MB 유의)  $\rightarrow$  ⑩ 제출하기 ('마이페이지'에서 '제출완료'확인)

- \*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 불가(신청기간 내에는 신청단계 상관없이 변경 가능)
-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 서류 각 1부

####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유의 / 참고사항	비고
	① 참여신청서	•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작성	-
필수	② 사업계획서	• 온라인 업로드	별첨 1
	③ 견적서	• 온라인 업로드(신청금액에 대한 견적서 PDF 스캔본)	-
선택	가점 증빙서류	•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본, 해당자에 한함)	별첨 2

##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기업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4.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 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20.4.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 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ㅇ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4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은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가주 함
- \* 가점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별첨2. 참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사업운영 등을 위해 발표평가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예정이며, 상기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선정**: 주관기관별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기업) 및 지원 금액을 확정
  - \* K-스타트업을 통해 선정공지(~'20.4.29.) 실시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선정통보일 이전에 진행된 과제는 지원하지 않음

## □ 추진일정

•				
공 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0=21181		(www.k-startup.go.kr)		
′20.3.11.		′20.3.27~4.7		~'20.4.27
협약체결		협약준비		지원대상 선정공지
K-스타트업 전자협약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결과 공지
(전담기관-주관기관-1인	_	지부담금 입금	_	(전담기관)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0.0710)
~ '20.5.15		~′20.5.8		~'20.4.29
사업수행		수시점검		최종보고 및 평가
1인 창조기업 및 수행업체	D	사업수행 및 사업비 내역점검 (주관기관)	D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
~ '20.10.30		'20.5월 ~ 10월 중		~′20.11.14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유의사항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는 고발조치됩니다.
- □ '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과제 ('첨부. 세부과제 지원항목' 참조)는 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된 경우 탈락 및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 동 사업과 타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 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6 문의 및 연락처

## □ 사업 신청 문의

주관(협력) 기관	주소	전화
㈜오퍼스이앤씨	서울 서초구 방배로 93(방배동)	02-6221-202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용인시 용구대로 2311(마북동)	031-270-9769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의왕시 이미로 40(포일동)	031-345-2366
㈜미래서비스 (인천창업통합지원센터)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928(논현동)	032-216-0091
대전광역시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도룡동)	042-864-5111
㈜비스퀘어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우동)	1877-1110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0-7499
전담기관(경	042-480-4479, 4335	

##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청·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첨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과제 지원항목

과제	세부과제
멀티 미디어	· (홈페이지) 회사의 제품·서비스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지원 · (모바일 앱/웹) 회사의 제품·서비스 특징 등을 반영한 홍보용 모바일 웹/앱 지원 · (홍보 동영상)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 동영상 지원 · (CM 송 제작) 촬영 및 성우 더빙 등을 활용한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 CM 송 제작 지원
	· 지원 제외 : 제품·서비스 자체를 구성하는 앱 개발 비용, 기존 홈페이지, 앱 리뉴얼 등
디자인	(전자 카탈로그)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제품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지원     (종이 카탈로그)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지원     (포스터 디자인)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포스터 등 인쇄 광고 디자인 및 인쇄 지원     (포장 디자인) 완제품 구성을 위한 포장 패키지 디자인 및 인쇄 지원     (브랜드 개발) 회사 및 제품ㆍ서비스의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로고 제작 지원     (제품 디자인) 완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디자인 등 지원
	• 지원 제외 : 제품 •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및 장비 구입비 등 * 재료비 :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등 ** 시제품 제작비 및 장비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압하는 비용 등
광고홍보	· (TV-라디오광고) 수도권 및 지역 방송국을 통한 제품·서비스 광고 송출 지원 · (신문·전문지홍보) 전문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광고 및 기사 게재 · (지하철·버스·옥외광고) 옥외광고매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광고 지원 · (온라인 홍보) 검색엔진, 오픈마켓, 소설커머스, SNS 채널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광고 지원
	· 유의 사항: 업력 1년 이상의 광고 대행사를 통한 용역(계약) 수행 필수
전시참가	· (국내·외 전시회) 국내·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부스) 지원
	· 유의 사항 ① 참가비/부스임차비만 지원 ② 창업기업이 직접 전시주최사 등과 계약 체결 및 입금 후 진행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디자인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 지원 제외 : 국내외 시장 조사를 위한 교육 등(수료 과정 포함)
인증획득	· (지재권 출원)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표·디자인·특허·실용신안의 국내외 출원 비용 · (규격인증 획득)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안전·기술 규격인증 비용
	· 지원 제외 : 국내·외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자격증 취득 등(수료 과정 포함)

※ '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과제는 신청 불가